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48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서영교・이해식・위성곤

이성윤 · 송재봉 · 허 영

임오경 • 박지혜 • 한정애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법원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해주던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 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함.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공판조서, 검증조서 등 공판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과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법원에 제 출한 모든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게 됨.

그러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신청 예정 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고 있 음.

이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제출 예정 기록에 대해서도 피해 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 로 허용하도록 하며, 검사가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사유를 통지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 4).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96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4조의4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⑨ 전항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경우 "재판장"은 "검사"로, "소송기록"은 "서류등"으로 본다.
- ①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29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96호 형사소송법 일부	법률 제20796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		
록 열람·등사) ① ~ ⑦ (생	록 열람·등사) ① ~ ⑦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⑧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		
	자 등은 제266조의3제1항제1호		
	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		
	<u>다.</u>		
<u><신 설></u>	⑨ 전항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검		
	사"로, "소송기록"은 "서류등"		
	<u>으로 본다.</u>		
<u><신 설></u>	⑪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		
	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